

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「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15. 10. 15.

대 구 광 역 시 장

□ 선발인원 및 지급액

○ 선발인원 : 70명 정도

구 분	대학생
일반장학생	50명
특별장학생	20명 (사회적 배려계층 10,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10)

○ 지급액 : 대학생 최대 280만원(타 장학금 수령액 공제)

※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※ 장학금은 2015년도 실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음

□ 대상자 선발기준

○ 공통기준

구 분	선발 기준	선발 방법
저소득기준 (소득인정액)	- 2015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	<각 분야별 경합시>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재산·소득이 적은 자 順으로 선발
성적 및 기타	-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 자	

- 소득인정액 기준 : 2015년도 기준중위소득 이하

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가구당 월소득(원)	1,562,237	2,660,196	3,441,364	4,222,533	5,003,702	5,784,870	6,566,039

*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)

** 8인 이상의 가구 : 1인 증가시마다 781,169원씩 증가(8인 가구 7,347,208원)

○ 분야별 기준

신청분야		선발기준	신청장소	선발방법
일반장학생		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	읍·면·동 주민센터	구청장·군수 추천, 市에서 선발
특별 장학생	사회배려계층	한부모·장애인가구, 다문화·조손가구		
	자원봉사활동 우수자	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 (2015.1.1~10.15 기간내)		

*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대구 거주자임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학생에 한함 (대학 소재지는 상관없음)

〈선발 제외 대상〉

- 공고일 현재 휴학중인 자, 학비면제자, 학생을 포함한 가구원 전부 대구시의 거주자
-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자
- 정규학기 초과 재학생
 - *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(2년제), 6학기(3년제), 8학기(4년제)까지 지원
 - *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(4년제)까지, 의,치학 계열 12학기(6년)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(5년)까지 지원
 - ☞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
- 사이버(원격)대학, 방송통신대학, 기능대학, 기술대학, 한국농수산대학, 학점은행제 등 제외
- 2015년도 중 타 장학금¹⁾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(근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보지 아니함 / 단. 2015년 1년 중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차액 지급 신청가능)

1) '타 장학금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, 멘토링 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. 단, **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 불인정**

□ **신청기간** : 2015. 10. 19(월) ~ 11. 2(월)

□ **신청장소** :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□ **제출서류**

서 류	발 급 처
- 신청서, 가정실태조사서 ²⁾ , 개인정보제공동의서	*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- 통장사본(본인 명의)	
-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(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)	* 학교에서 발급
- 2015년도 장학금 수혜(미수혜) 확인서	* 학교에서 발급
- 장학금 수혜(미수혜) 관련 서약서	* 본인 작성(홈페이지 서식 참조)
-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(2015년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자)	*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 홈페이지에서 발급 (문의 : 대구자원봉사센터, ☎ 803-6070)
- 소득·재산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	* 전월세 계약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시 제출 요청

□ **선발 및 지급**

○ 장학생 선발 : 2015. 12월 중(개별 통보)

○ 장학금 지급 : 장학증서 전달 후 개인별 계좌입금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대학생 주소지**(대학생이 대구 외 지역 주민등록되었을 경우 부모 주소지)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) 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함

〈선발 제외 대상〉

<공통사항>

- 공고일 현재 학생과 부모가 모두 대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(주민등록등본 확인)
- 공고일 현재 휴학중인 자, 학비면제자

<개별사항>

- 고등학생 : 기초생활수급자, 2015년 중 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연간 50만원 미만인 자
(단, 2015년 중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차액 지급 신청가능)

○대 학생

-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자
- 정규학기 초과 재학생
 - *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(2년제), 6학기(3년제), 8학기(4년제)까지 지원
 - *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(4년제)까지, 의,치학 계열 12학기(6년)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(5년)까지 지원
☞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
- 사이버(원격)대학, 방송통신대학, 기능대학, 기술대학, 한국농수산대학, 학점은행제 등 제외
- 2015년도 중 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자
(근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/ 단, 2015년 중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차액 지급 신청가능)

※ '타 장학금'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,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.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

〈기초생활수급자 학비지원 현황〉

- 고등학생 : 입학금·수업료 전액, 교과서대, 학용품비
- 대 학생(한국장학재단) : 국가장학금 480만원

< 서식 2 > 학교에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

2015학년도 장학금(수혜, 미수혜) 확인서

제 호					
	고등학교	학과	학년	반 별	반 번
	대학(교)	학과	학년	학 번	
성 명			생년월일		
주 소 (전화번호)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장학금 지급내역					
구분	지급내용 (장학금 명칭)	지급액	미지급 (‘지급사실 없음’ 으로 표기)	비 고 (연간 수업료, 입학금, 등록금 총액)	
상반기		금 원		금 원	
하반기		금 원		금 원	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		
2015년 월 일					
확인자			고등학교장 <input type="checkbox"/>		
			대학(교)총장 <input type="checkbox"/>		
대구광역시장 귀하					

- ※ 【장학금 수혜시】 장학금 명칭, 지급액, 비고란 기재 (수기 기재 불인정)
- ※ 【장학금 미수혜시】 미지급 사실 확인 및 비고란 기재 (수기 기재 불인정)
- ※ 학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에 연간 수업료, 입학금, 등록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등 납부 고지서 전체 첨부(수업료, 입학금, 등록금 총액과 장학금과의 차액확인용)

서 약 서

- 성명(생년월일) : (. . .)
- 주 소 :
- 전화번호 :
- 재학사항 : 고·대학·대학교 학부(과) 학년

위 본인은 2015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생(저소득주민자녀) 장학금 신청에 있어 타 장학금과 이중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며, 만약 타 장학금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재육성 장학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서약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대구광역시장 귀하

서 약 서

○ 성명(생년월일) : (. .)

○ 주 소 :

○ 전화번호 :

○ 재학사항 : 고·대학·대학교 학부(과) 학년

위 본인은 2015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생(저소득주민자녀) 장학금 신청에 있어 ()장학금 ()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, 만약 이 금액 이상의 장학금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재육성 장학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서약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대구광역시장 귀하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1.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

- 정보제공 범위 :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소득 및 재산(자동차 포함) 내용
- 사용목적 : 대구광역시 인재육성(저소득주민자녀)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

2.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자

- 신청인(학생) 인적사항

학생 성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동의확인 (서명)
			(인)

- 소득·재산관련 정보 제공 동의자

동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동의확인 (서명)
			(인)
			(인)
			(인)

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인재육성(저소득주민자녀) 장학금 신청·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·재산 등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나. 소득·재산 정보등의 제공 범위, 대상등 : 복지대상자 선정시 활용하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에서 가능한 범위 및 기관

※ 제공받은 정보는 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.

※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
2015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연 락 처 :

구청장 · 군수 귀하

※ 유의사항 : 동의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(인장 포함)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.

다만,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(인감 포함)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.